農民이 負擔하는 租稅의 減免에 관한 考察

金 基 成
責任硏究員, 農業構造硏究室

Ⅰ. 序 言
Ⅱ. 農民負擔 租稅의 減免 現況
Ⅲ. 農民 租稅減免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Ⅰ. 序 言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 중 주요 稅目은 農地稅를 비롯하여 주민세, 재산세 및 방위세 등이고, 그밖에 경우에 따라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直接稅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間接稅를 부담한다. 이때 所得稅로는 林業所得, 畜産所得, 山林所得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農土의 讓渡所得稅도 부담한다. 農土와 林野의 매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을, 農業生産資材의 구입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그리고 揚水用原動機를 포함한 農機械用 油類에 대하여서는 特別消費稅 등을 각각 부담한다. 이와 같은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하여는 그 輕重과 公平性 내지 衡平化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1] 本稿는 이들 稅目의 현행 稅法上 減免現況을 관련 法規별로 구분, 점검하여 일반세법(例 : 地方稅法, 所得稅法 등)상의 減免 規定이 擔稅現實과의 乖離와 磨擦을 어느 정도나 완화, 보완하고 있는가를 어림해 봄으로써 현행 稅法上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데에 참고코자함에 目的이 있다.

Ⅱ. 農民負擔 租稅의 減免現況

租稅의 減免은 일반적으로 非課稅, 減稅, 免稅 및 少額不徵收 등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의 무리한 감면은 오히려 지나친 稅收減少와 不公平 課稅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요하며, 그에 대한 적극적, 효율적인 調整을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2]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의 減免現況을 주요 稅目別로 관련 法規에 의거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農地稅의 減免

가. 國, 道, 市 등에 대한 農地稅 非課稅

농지세는 원칙상 國, 道, 市, 郡 및 地方自治團體 組合 등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치 않는다. 다만 그 農地를 他人이 경작할 때는 농지세를 부과하되 擔稅者는 耕作者이다(地方稅法 第200條의①). 그러나 國家와 道 등의 농지를 他人이 경작하는 경우나, 개인의 농지를 賃耕하는 경우의 農地稅의 耕作者 부담이 반드시 바

람직한가에 대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다.[3]

나. 開墾農地에 대한 期限附 免稅

농지 중 農地擴大開發促進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未開墾地를 개간하여 농지가 된 경우는 농지가 된 해로부터 10년 동안에 한하여 농지세를 면제한다(地方稅法 第201條).

다. 埋立干拓年期 免稅

公有水面埋立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有水面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농지가 된 경우는 농지가 된 해로부터 10년 동안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地方稅法 第202條).

라. 荒地年期 免除

1) 災害로 인하여 地形이 변경되었거나 作土가 손상되어 荒地가 된 土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農地稅를 면제할 수 있다. 2) 再次 荒地가 되어 免稅期間을 정하였을 때는 전에 정한 免稅期間이 소멸한다(地方稅法 第203條, 第204條).

마. 災害 減免

災害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收穫量이 기준수확량보다 현저히 감소된 경우, 1) 收穫量이 7할 이상 감소 또는 전무할 때는 農地稅 全額을 면제하고, 2) 5할 이상~7할 미만 감소시는 收入金額決定에 있어서 收穫量의 5/10를 경감하여 계산하며, 3) 2할 이상~5할 미만 감소시는 그 減收量을 제외한 收穫量에 의하여 收入金額을 결정한다.(地方稅法 第206條)

바. 資力喪失 減免

1) 납세의무자가 災害 및 기타 불가항력의 事由로 인하여 納稅가 곤란할 때는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가 戰爭이나 事變 등으로 인하여 從軍하였을 때, 또는 戰時勤勞勞動法에 의하여 징용되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상 同法 第207條의①②).

사. 公用 및 公共用地 免稅

國, 道, 市郡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 등이 公用 또는 公共用에 공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農地稅를 면제한다(同法 第208條).

아. 學校用地 등의 免稅

學校, 孤兒院, 養老院, 寺刹, 教會 등의 소유농지로서 학술 또는 自家消費用에 供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農地稅를 면제 한다(同法 第209條).

자. 山林苗圃地 免稅

농지세 납부農家라도 山林契,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경영하는 山林苗圃地에 대하여는 農地稅를 면제한다(租稅減免規制法 第14條의 2).

차. 農地稅의 免稅點과 少額不徵收

농지세의 免稅點은 甲類農地稅가 74萬원(米穀粗收入 기준), 乙類農地稅가 1期에 11萬원(年 2期, 所得額 기준)이며, 稅額이 500원 미만일 때는 징수치 않는다(地方稅法 第212條).

2. 財產稅의 減免

가. 畜產用土地 및 建物免稅

畜產業者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는 財產稅를 면제한다(租稅減免規制法 第9條의 4).

나. 農民의 居住用土地減免稅

原則上 주거용 토지는 그 稅率이 100평 이하가 0.3%, 100평 초과~200평까지가 0.5%, 200평 초과~300평까지가 1%, 300평 초과~500평까지가 3%, 500평 초과는 5%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農家에 대하여는 土地의 면적에 불문하

고 0.3%의 稅率만을 적용하여 住居用土地에 대한 財産稅負擔을 줄여주고 있다(地方稅法 第188條의 ①)

다. 田畓 및 牧場用地 등의 減免稅

一般土地에 대한 財産稅의 稅率이 그 價格의 5% 이상임에 비하여 (예 : 골프場用 土地,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등은 5%) 農民이 소유한 田, 畓, 果樹園, 牧場用地 등은 그 價額의 0.1%로 낮추어 정함으로써 農民의 財産稅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地方稅法 第188條의 ①).

라. 財産稅非課稅

財産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技藝 및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 事業者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도로 하천 제방 史蹟地 묘지用 등에 供하는 것은 財産稅를 非課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중 農民의 減稅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河川과 堤防에 관한 것이다(同法 第148條의 ① 4.).

마. 財産稅의 免稅點

재산세의 免稅點은 財産價額 30萬원이고 이때 財産價額의 적용은 1構의 建築物, 1筆의 土地, 1隻의 船舶을 기준으로 한다. (地方稅法 第185條).

바. 기타 財産稅의 免稅

그밖에 天災 등 특수사정이 있어 재산세의 減免을 요할 때는 市長, 郡守가 市郡議會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地方稅法 第195條).

3. 所得稅의 減免

가.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 免除

山林法의 규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거나 山林關係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造林한 山林으로부터 생긴 所得에 대하여는 造林한 날로부터 20년간 所得稅를 면제한다(租稅減免規制法 第37條의 2).

나.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免除

內國人이 소득세법 第4條의 규정에 의한 綜合所得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畜産業에 투자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를 면제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畜産業」이란 「소, 말, 양, 돼지, 토끼, 친칠라, 사슴, 밍크, 가금, 또는 꿀벌의 飼育, 增殖, 採卵, 採毛 搾油 등을 하는」, 〈表 1〉에 제시한 施設과 規模를 갖춘 事業이다[4](租減法 施行令 第18條의 2).

表 1 **所得稅 免除 畜産業의 施設과 規模**

㉮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

구분 / 사업종별	가축 (두수)	축사 (m^2)	초지 또는 사료포 초지 (ha)	초지 또는 사료포 사료포 (ha)
한우목장사업	1,000	4,950	500	250
육우목장사업	1,000	4,950	500	250
유우목장사업	1,000	8,250	500	250
산양목장사업	10,000	8,250	500	250
면양목장사업	10,000	8,250	500	250

㉯ 분할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

구분 / 사업종별	가축 (두수)	축사 (m^2)	초지 또는 사료포 초지 (ha)	초지 또는 사료포 사료포 (ha)
한우목장사업	200	990	100	50
육우목장사업	200	990	100	50

다. 畜産業에 대한 租稅特例

內國人으로서 「……重要産業……」을 영위하는 자는 그 所得에 대한 減免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租減法 第4條의 8), 畜産業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畜産業」에 한하여 이 規定의 적용을 받는다. 즉 畜産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所得發生日[5]이 속하는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 개시일로부터 3年내에 종료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그 畜産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所得稅를, 그리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거기서 발생한 所得稅(또는 法人稅)의 50／100에 상당하는 稅

額을 감면한다.

라.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면제

公共用地의 取得 및 손실보상에 관한 特例法의 적용을 받는 公共事業 또는 道路建設事業에 필요한 土地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土地의 讓渡所得稅는 면제한다(租稅減免規制法 第3條3의①)

마. 農漁民 貯蓄特別預金利子와 預金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

농어민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特別預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預託金 포함)의 利子와 配當金所得 등은 所得稅 非課稅 對象이다(단, 農漁民목돈저축예금은 世帶當 300萬원 이하인 것,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의 預託金은 500萬원, 出資金은 200萬원 이하인 것에 한함)(租稅減免規制法 第3條의 4의 2)

바. 所得稅法 規定에 의한 기타 非課稅

1) 田畓을 이용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의 非課稅(所得稅法 第5條의 2).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農家副業所得(축산소득, 양어소득, 고공품소득 등)의 合計額이 186萬원 이내의 경우의 所得稅非課稅(所得稅法 第5條의 3, 同施行令 第6條의 2).

3)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한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충당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의 非課稅 (所得稅法 第5條의 6).

4) 讓渡時까지 8년 이상 自耕한 농지로서 農地稅의 課稅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의 非課稅(同法 第5條의 6).

5)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의 非課稅(同法 第5條의 6).

6)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 非課稅(同法 第5條의 6).

4. 取得稅

農民에게 해당되는 取得稅 免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農地改革法의 규정에 의한 農地의 取得에 대한 取得稅免稅(租減法 第10條의 2의 ②)

나.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에 대한 取得稅免除(租減法 第10條의 2의 ③)

다.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農家住宅에 대한 取得稅免除(同法 第10條의 2의 ⑧)

라. 畜産業을 영위키 위하여 취득하는 牧場用地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取得稅免除(同法 第10條의 2의⑨)

마. 養蠶業 및 양송이 栽培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取得稅 免除(同法 第10條 2의 ⑩)

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정착하는 자가 취득하는 農耕地와 住宅에 대한 取得稅免除(同法 第10條의 2의 ⑲)

사. 取得稅의 免稅點 ; 現行法上 取得稅의 免稅點은 30萬원이다.(同法 第113條)

5. 登錄稅

農民에게 해당하는 登錄稅免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農地改革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登錄稅免除(租稅法 第5條 2의 ②)

나.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시행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農地擴大開發促

進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에 대한 登記稅免除(同法 第5條의 2의 ③)

다.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移住者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農耕地와 住宅 등의 登記에 대한 登錄稅免除(同法 第5條의 2의 ⑯)

라.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法에 의한 移住者가 定着을 위하여 취득하는 農耕地 및 住宅의 登記에 대한 登錄稅의 免除(同法 第5條 2의 ⑱)

마. 山林開發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開發地域 내에서 山林의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山林의 등기에 대한 登錄稅의 免除(同法 第5條의 ③)

6. 印紙稅

農民에게 해당되는 印紙稅免除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農協, 畜協, 및 水協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約定書(融資合計額 500萬원 이내). (租減法 第6條의 6)

나.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財産權의 設定, 移轉, 變更 또는 消滅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한 印紙稅 免除(租減法 第6條의 8)

다. 농협으로부터 農村住宅 改良資金을 융자받거나, 住宅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키 위하여 작성하는 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租減法 第6條의 10)

라. 農, 畜, 水産人이 農, 畜, 水協으로부터 物品을 외상으로 구입키 위하여 작성하는 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租減法 第6條의 11)

마. 農地擴大開發促進法 또는 公有水面 埋立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造成事業에 관하여 작성하는 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租減法 第6條의 12)

7. 相續稅와 贈與稅

가. 山地開發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山林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는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면제한다.(租減法 第3條의 2의 ①)

나. 相續稅法의 규정에 의한 相續財産 또는 贈與財産 중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造林計劃에 따라 조림한 山林(保護林과 採種林 포함)이 있는 경우는 당해 山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租減法 第3條 2의 ②)

다. 국내에 주소를 둔 者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金額을 課稅金額에서 공제한다.(相續法 第11條)

① 配偶者가 있는 경우는 1,600萬원

② 未成年者가 있는 경우는, 24萬원×20歲에 달하는 때까지의 年數

③ 年老者가 있는 경우는 100萬원

④ 不具廢疾者가 있는 경우는 180萬원 등

라. 국내에 住所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相續이 개시된 경우에 相續 開始當時 被相續人의 상속재산가액에, 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稅課稅對象이 되는 農地의 價額이 포함되어 있는 때는 120萬원에, 120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相續人이 21歲가 되는 해부터 相續 개시 年度까지 農耕 종사 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金額의 合計額을 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農地相續 控除)이때 大統領令이 정하는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相續財産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相續人을 말한다.(相續稅法 第11條의 2 및 同施行令 第8條의 2).

마. 相續稅는 기초공제(800萬원), 상속재산공

제(人的 控除 ; 예컨대 配偶者 1600萬원 등), 농지상속공제 등을 공제한 殘額이 20萬원 미만일 때는 相續稅를 免除한다.(相續稅法 第12條)

8. 關 稅

農民과 관계있는 關稅의 減免事項은「農業 機械化促進을 위하여 農業機械製造業體가 도입하는 農機械製造用 部分品에 대하여 關稅를 경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租減法 第12條)

9. 附加價値稅

農漁民에 대한 附加價値稅 減免規定은 다음과 같다.

가. 田, 畓, 果樹園, 牧場用地 및 林野등의 賃貸(料)에 대한 免稅(附加價値稅法 第1條의 ②, 同 施行令 第2條의 ①)

나. 所得稅法 第5條 3號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가 면제된다.(附加價値稅法 施行令 第1條의 3의 ②)

다. 沿近海漁業用 船舶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協中央會에 직접 공급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면제한다.(租減法 第11條의 2)

라. 가공되지 아니한 食料品과 土地는 附加價値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①)

10. 特別消費稅

가. 農漁村開發公社가 직접 사용하거나 資本金의 50% 이상을 출자한 企業體에 사용할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도입하는 機械 및 器具 등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면제한다.(租減法 第11條의 ②)

나. 沿近海漁業用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協中央會에 직접 공급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면제한다.(租減法 第11條의 ⑬ 및 特別消費稅法 第18條의 ①)

11. 防衛稅

所得稅法上 非課稅 내지 減免稅對象 중에서 防衛稅가 非課稅 내지 減免稅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田畓의 利用으로 인한 不動產所得에 대하여는 防衛稅를 면제한다. 그밖에

나. 8년 이상의 自耕農地의 讓渡所得稅.

다. 農地交換으로 인한 讓渡所得稅.

라. 土地收用으로 인한 讓渡所得稅.

마. 1世帶 1住宅者의 讓渡所得稅 등과

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牧場을 이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내의 土地와 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등에 대하여도 防衛稅를 면제한다.(이상 防衛稅法 第3조, 所得稅法 第5條의 2, 및 所得稅法 第6條의 2의 ③)

Ⅲ. 農民租稅減免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租稅의 減免은 전술한 바와 같이 國家 차원에서 보아 稅收減少要因과 동시에 公平課稅 沮害要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法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法은「일정한 法律에 의하지 않고는 감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6] 그러나 예컨대 우리의 현실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內資動員과 戰略產業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租稅減免은 불가피하며, 농촌의 營農後繼者育成을 위하여는 農地, 草地, 山地 등에

대한 相續稅減免措置 등도 필요한 代案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租稅의 減免은 一般課稅原則에 대한 合法的인 例外措置이기는 하나 그에 의한 副作用도 없지 않다.[7] 農民의 租稅부담도 이점을 감안하여 課稅와 減免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민이 부담하는 租稅는 주로 그 原則的인 稅法에 의한 課徵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의 減免稅에 관한 考察의 意義도 稅收減少나 課稅의 不公平性 문제보다는 오히려 一般原則的인 法規를 적용 할 때 그 法規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제기되는 農民過負擔 내지 社會所得階層 (都農間 또는 大小農間 등)의 所得分配의 不均衡性의 修正이라는 側面에서 찾고자 한다.

稅制改善에 의한 所得再分配效果와 農民의 負擔輕減效果는 內國稅 중 直接稅의 比重과 農民負擔 直接稅의 稅制構造(예컨대 稅率, 課標 및 基礎控除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인바, 우선 稅制構成에 있어서 直接稅의 比率이 낮기 때문에 (1980년 ; 36.7%) 稅制改善에 의한 所得再分配效果는 그만큼 적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시되고 〈圖 1〉, 한편 農民이 부담하는 直接稅의 構成은 경지규모 1.0ha 의 水稻單一作(耕地의 60%가 畓인 것으로 가정)인 農地改良組合 會員農家의 경우, 농지세가 租稅 총부담액의 82~86% 水準이고, 住民稅가 7%, 財産稅가 5~9%, 방위세가 2~3%의 比重이며, 2.0ha 農家의 경우, 農地稅는 83.7%, 재산세가 7.6%, 주민세가 6.6% 및 방위세가 2.2% 등으로서 농민부담의 조세의 大宗은 農地稅이다.〈表 2〉

따라서 농민이 부담하는 租稅의 減免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農地稅 내지 農地에 關聯된 稅金의 減免問題로 귀착한다. 그런데 農地稅에 있어서는 減免에 의한 負擔의 輕減보다 稅制自體의 기본적인 一般原則面에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8] 편의상 本稿에서는 農地稅에 관해서는 課標, 稅率, 基礎控除 등 基本原則的인 측면과 일부 減免稅條項을 아울러 고찰하고, 기타 租稅는 減免稅의 주요 문제점만을 찾아 그 改善方向을 제시코자 한다.

圖 1 直間稅 비율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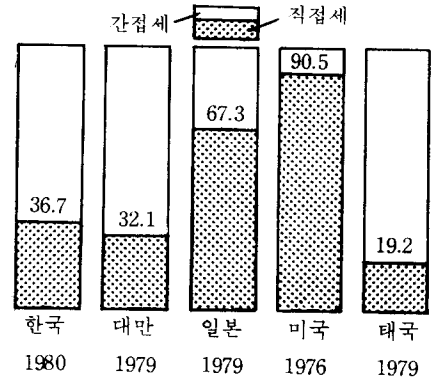

表 2 農民이 負擔하는 主要 稅目別 構成比[1]

稅目別 / 耕地規模[2]	直接稅					主要公課金		租稅公課金 對比	
	農地稅	財産稅	住民稅	防衛稅	小計	農組會費	小計	農地稅	農組會費
	%								
1.0ha	79.3	11.1	6.8	2.9	100.0	91.3	100.0	35.6	50.3
1.5ha	81.7	9.2	6.5	2.5	100.0	93.8	100.0	42.8	44.6
2.0ha	83.7	7.6	6.6	2.2	100.0	95.3	100.0	46.3	42.6
3.0ha	86.5	5.1	6.7	1.7	100.0	96.8	100.0	49.8	41.1

1) 水稻單一作農으로서 農組會員農家의 경우임.
2) 各耕地規模別 畓과 田의 比는 6 : 4로 假定함.

1. 農地稅의 減免

農地稅制上의 문제는 직접세에 의한 都農間比較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都市勤勞者 綜合所得稅와의 상대적 比較方法이 基本모델이며, 具體的으로 納稅者의 소득과 課標 및 稅率 등의 調和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있다.

가. 農地稅의 基本構造上의 問題

農地稅制의 基本構造上 문제는 納稅者인 農民의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稅率, 課標 및 基礎控

圖 2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所得基準 稅率構造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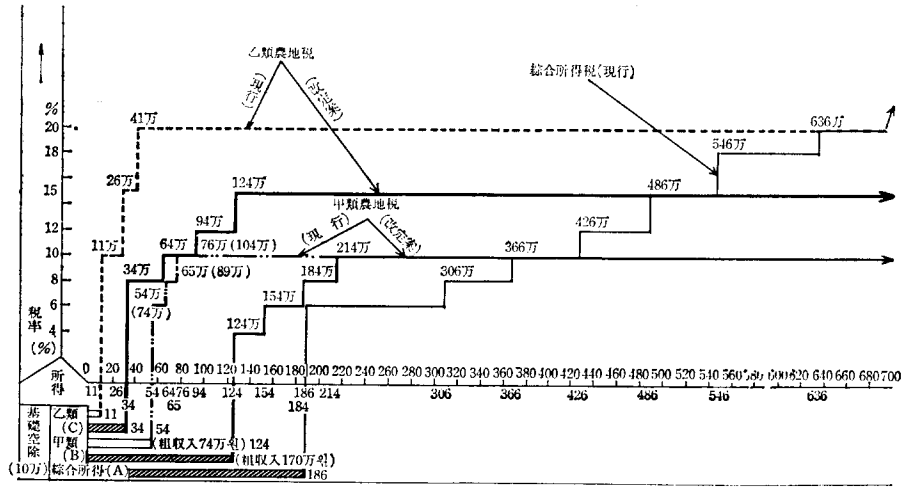

1) 甲類 農地稅의 ( ) 안의 數値는 米穀의 粗收入 金額임.
2) 米穀所得率 73% (1977, 78, 79 3개년 평균) 적용.

除 등이 어떻게 결정되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圖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 農地稅의 基礎控除는 현행의 甲類農地稅 74萬원(米穀粗收入 기준), 乙類農地稅 11萬원(1期)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기초공제액 186萬원(年間) 등을 감안, 上向調整할 것(〈圖 2〉에서는 甲類稅 기초공제를124萬원, 乙類稅 기초공제를 34萬원으로 제시하고 있음)과,

2) 課標間隔은 현행의 「15萬원—15萬원—無制限」式의 15萬원 3段階制를 米價, 物價, 所得水準 등을 감안, 보다 擴大多段化할 것(〈圖 2〉에서는 30萬원—30萬원—30萬원—無制限」式의 30萬원 4段階制를 제시함),

3) 1)과 2)의 再調整에 따라 稅率도 再調整(예컨대 甲類農地稅는 현행 「6%—8%—10%」에서 「4%—6%—8%—10%」로, 乙類農地稅는 현행의 「10%—15%—20%」에서 「8%—10%—15%—18%」등으로)할 것 등이 요구된다.

나. 減免規制法上 農地稅의 問題

1) 賃耕農地에 대한 農地稅 耕作者 負擔

農地稅의 負擔만으로도 그 稅制構造上의 不合理性 때문에 무겁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위에 다시 賃借料(3／7制 또는 4／6制)까지 부담케 될 경우 借地農耕者의 負擔이 과중함을 감안, 그들에 대한 農地稅 輕減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이 경우 農地賃貸契約登錄制 등에 의한 農地 賃貸借事實確認 제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賃借農禁止條項의 改定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開墾農地 및 埋立干拓地의 10년간 農地稅 免稅

地方稅法 第201條 및 202條에 정한 개간농지와 매립간척지에의 10년간 농지세 免稅制는, 10년 후의 급격한 擔稅衝擊을 줄이고 稅收減少도 완화하는 취지로 「8년간 完全免稅, 그후 5년간 半額免稅」 등의 方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3) 災害減免

減免率과 條件에는 異見이 없으나 그것을 실제 적용함에 요하는 技術的 側面의 미흡으로 減免權者의 裁量權의 폭은 넓고 被免除者인 農民의 불만의 素地가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災害로 인한 減收量調査 내지 算出方法의 科學化가 시급히 요청된다.

4) 學校用地 등의 農地稅減免

地方稅法 第209條에 학교, 고아원, 양로원, 사찰, 교회 등의 所有國地로서 學術 또는 自家消費用에 供하는 경작농지에 한하여 農地稅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① 學校 등이 學術用으로 供하는 土地라도 面積의 제한없이 무한히 감면함은 公平課稅原則에 반하는 것이며,

② 이 條項을 빙자하여 自家消費用을 초과하는 面積과 收量에 대하여까지도 減免稅받으려는 意識이 짙어진다면 이것도 규제할 수 있는 法規的 補完이 요구된다.

③ 그러므로 本條의 效果的 適用을 위하여는, 農地所有의 名目과 事實間 一致性 여부를 확인키 위한 全國規模의 農地의 所有 및 耕作實態調査를 國家次元에서, 科學的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農地稅의 減免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타 農民의 租稅免減

가. 所得稅의 減免

1) 林業所得의 減免稅

林業所得이란 種苗業, 育林業, 山林地域에서 영위하는 초목의 진, 껍질, 열매, 뿌리, 꽃, 이끼, 약용식물 등의 채취업과 버섯類 등의 재배 및 채취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所得을 말하는 바(所得稅法 施行令 第29條), 이들 品目 중 버섯類 등의 생산과 같은, 輸出을 통하여 外貨獲得源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그 增産 내지 輸出增進을 위하여 적극적인 減免稅措置가 요구된다.

2) 山林所得의 減免稅

山林所得이란 造林한 期間이 5년 이상인 林地의 林木伐採 또는 林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인바(所得稅法 第14條), 현재 海外依存度가 높은 木材의 自給率을 높이고 山林開發 및 科學營林을 촉진키 위하여, 山林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산림소득에 대하여도 보다 폭넓은 減免稅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畜産所得의 減免稅

租減法 第4條의 8에 의하면, 畜産業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所得發生으로부터 3년간 全額免稅, 그 후 2년간 半額免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畜産業은 資本의 회임기간이 긴 長期的인 投資事業으로서, 民間資本의 유치가 어려운 事業이므로 畜産振興을 위한 民間資本投資를 促進키 위하여 위의 畜産業減免稅 기간을 더 長期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예 : 所得發生後 5년 간은 全額免稅, 그후 5년간은 50% 免稅, 다시 5년간은 30% 免稅 등으로).

4) 農地讓渡所得의 減免稅

현재 「讓渡時까지 8년 이상 自耕한 農地로서 농지세과세 대상인 農地의 讓渡」에 한하여만 讓渡所得稅를 면제하고 있는데, 農地의 流動性 提高를 통한 農地規模의 擴大와 營農機械化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 非課稅 法定 소요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할 것이며, 都市 大資本 등에 의한 投機性 農地賣買가 아닌 한 農地의 讓渡所得에 대해서는 減免稅惠澤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相續稅·贈與稅의 減免

1) 農地의 相續稅減免

농지상속의 경우는 「農地相續控除」 등 현재 自耕農으로서 向後에도 自耕할 相續人에 한하여는 減免稅惠澤을 주고 있으나, 多數相續人에게 분할된 農地의 所有者(相續人)들이 그들 사이에 自耕과 農地統合의 目的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역시 農地소유 규모의 확대와 영농 기계화의 기반구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상속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農地 등의 取得稅, 登錄稅 및 印紙稅 등의 減免

현행법상, 農地改革法(취득세, 등록세 등 免除), 農地擴大開發促進法(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免除) 등에 의한 農地, 住宅 등의 取得, 登記 등에 대하여는 取得稅 登錄稅 및 印紙稅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 相續農地의 自耕과 農地統合의 목적으로 相續人間의 賣買에 대하여도 이들 稅金이 면세되어야 함은 農地相續稅의 경우와 같다.

라.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등의 減免

1) 附加價値稅 減免

현행 稅法上 농민이 생산하는 農產物의 去來(非農業人의 農產物購入行爲)에 대하여는 부과치 않음에 반하여, 그 農產物의 생산에 투입하는 農資材(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의 去來(農民의 工產品 購入行爲)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課稅衡平原則에 어긋나므로 최소한 농민의 農資材구입에 대하여는 면세되어야 한다.

2) 特別消費稅減免

營農機械化 및 農用水適期供給을 지원키 위하여 農機械(揚水用原動機 등 포함)用 油類購入에 따르는 特別消費稅는 漁業用 船舶에의 油類供給의 경우와 같이 減免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註 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經濟 第 Ⅲ第4號, 「農民의 農地稅負擔 現況과 問題點」 198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研究, 1981, 第Ⅲ章 第5節 등 참조.

2. 租稅減免規制法 第1條에 「이 法은 租稅의 減免에 관한 事項을 규제함으로써 課稅의 公平과 稅收의 확보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同法 第2條에서 「이 法및 條約과 다음 各號에 계기하는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租稅의 減免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任意의 減免稅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때 해당 法律은 所得稅法, 地方稅法 등 27~8개 法律이다.

3. 賃耕(他耕)의 경우 農地稅 擔稅者가 누구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時代의 社會, 經濟的 狀況에 따라 見解가 다양하다. 즉, 高麗 李朝時代부터 있어온 「租」와 「稅」의 制度自體가 農地를 근거로 하여 耕作者 負擔을 규정해 왔으며, 近代租稅制 하의 1960년대 이후에 있어서도, 1962년의 改正地方稅法에서는 國家 등의 所有農地에 대하여 耕作者가 농지세를 부담했는데, 1969년의 改正 地方稅法下에서는 所有者負擔으로, 다시 1973년의 法改正 이후부터는 耕作者負擔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4. 租稅減免法 第4條의 6 등에 의거 면세할 畜產業의 소득 금액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租減法施行令 第6條의 ①): ①內國人이 畜產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T_1 = T_i \times \frac{I_1}{t_i}$ ……면제할 소득세액, ②內國人이 畜產法人에 투자하는 경우는 $T_2 = T_i \times \frac{I_2}{t_i}$ ……면제할 소득세액.
(단, T_i는 所得稅法 第16條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결정액 $\times \frac{50}{100}$, I_1는 畜產業投資計劃書에 계상된, 自己資金으로 투자할 金額, I_2는 出資者의 納入金額, t_i는 所得稅法 第4條의 규정에 의한 綜合所得—所得稅法 第16條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times \frac{50}{100}$임).

5. 여기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소득 발생일이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해당畜產業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개시일을 말한다.

6. 租稅는 租稅減免規制法과 條約, 그리고 기타 법률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인지세법, 지방세법, 방위세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關係法律에 의해서만 그 減免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7. 租稅減免措置에 의한 副作用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①稅負擔의 公平이나 財政需要充足에 逆機能的이다. ②實效稅率은 낮으면서 名目稅率이 높은 例가 많아서 減免惠澤을 못받는 納稅者에게는 脫稅意慾을 자극하는 폐단이 있다. ③最高稅率 適用계층의 擔稅率이 名目上으로는 높지만 實效稅率은 中間階層보다 낮다는 稅制運營上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 등.

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民의 農地稅負擔現況과 問題點,, 「農村經濟」, 第Ⅲ卷4號, 1980 참조.

參考文獻 및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81.
_____, 「도시가계연보」, 1980.
農水產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_____, 「농림통계연보」.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經濟」, 第3卷第4號, 1980, pp. 61-74.
_____, 「農村經濟」, 第4卷第2號, 1981, pp. 39-46
財務部, 「韓國稅制史」, (上, 下), 1979.
經濟科學審議會議, 「高度產業社會에 부응하는 韓國의 農村開發方向」, 1980.
_____, 「中長期稅制改編에 關한 研究」, 1980.